

신	각 언론사 국제, 법조, 사회 담당 기자
발 신	민족문제연구소
담 당	민족문제연구소 / 담당 대외협력실장 김영환(010-8402-1718)
일 시	2019. 5. 1
목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의 한국 내 자산매각 등에 대한 소송 대리인 및 지원단 공식입장

2018. 10. 30., 대법원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신일철주금은 2019. 4. 1. 회사명을 일본제철로 변경하였음)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위 판결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에 대한 배상판결도 잇달아 내려졌습니다.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이하 ‘대리인 및 지원단’이라고 함)은 위 대법원 판결 이후 피고 기업들에게 자발적으로 판결을 이행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해 왔지만, 오늘까지 어떠한 성의 있는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피고 기업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고 기업들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은 너무나도 지연된,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또 다른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 2000. 5. 1. ‘노동자의 날’을 맞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에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일제시기 강제동원의 문제는 ‘강제노동금지’라는 노동인권의 핵심을 위반한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오늘, 그리고 2018. 10. 3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지 반년이 지난 2019. 5. 1. 노동절에, 대리인 및 지원단은 두 기업의 압류된 자산에 대한 현금화절차 개시 및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 압류 자산 매각명령신청 내용

대리인은 2019.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의 주식 19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73,970,000원)’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

. 매각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피엔알 주식은,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의 손해배상채권을 권원으로 하여 2019. 1. 및 같은 해 3.경에 압류된 주식입니다.

2. 압류 자산 매각명령신청 내용

대리인은 2019. 5. 1. 울산지방법원에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76,500주(액면가 10,000원 기준 765,000,000원)’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매각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은, 강제동원 피해자 23명의 손해배상채권을 권원으로 하여 2019. 3.경 압류된 주식입니다. 위 압류시점에서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23명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지연이자 포함 3,496,711,558원이었으나, 후지코시가 소유한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의 액면가 총액이 이보다 작아, 소유 주식 전체를 압류했고, 이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했습니다.

3.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은 자발적인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명시신청을 2019.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 등이 이미 압류된 사실이 있으나, 지적재산권 이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에게 특정일까지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명령을 내릴 것이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및 지원단은 피고 기업들과의 협상의사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

대리인 및 지원단은 지난 2019. 3. 26. 보도자료에서 “90세를 전후로 한 생존 피해자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현금화를 늦출 수 있는 마지노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입장발표 이후 강제동원 가해기업을 비롯한 그 어떤 주체로부터의 의사표시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로부터 반 년이 지난 지금, 대리인 지원단은 더 이상 현금화 절차를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각명령신청 이후 현금화 대상이 되는 자산(주식)에 대한 감정절차 등 일련의 현금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서가 일본 기업들에게 송달되는 기간까지 고려할 때 위株式이 실제 현금화될 때까지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리인 및 지원단은 위 기간 동안 강제동원 가해기업들과 여전히 포괄적인 협의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밝힙니다. 가해기업들이 지금이라도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협의에 응하기를 희망합니다.

2019. 5. 1

,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지원단 민족문제연구소